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시설,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·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“소방기술민원센터”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의2가 신설(개정 2021. 1. 5., 시행 2022. 1. 6.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두도록 함(안 제1조의2 제1항)
- 나.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(안 제1조의2제2항)
- 다.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련 민원 처리 등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를 정함(안 제1조의2제4항)
- 라. 기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, 시·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조의2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14. ~ 7. 26.)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조의2) 제1항 중 “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1항”으로 하며,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 민원(이하 “소방기술민원”이라 한다) 처리

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
 3. 소방기술민원 관련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
 4. 소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·관리
 5. 소방기술민원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처리
 6.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 관련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, 시·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</u>

관련 민원(이하 “소방기술민원”이라 한다) 처리

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

3. 소방기술민원 관련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

4. 소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·관리

5. 소방기술민원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처리

6.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 관련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, 시·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조의2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

제1조의3(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

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소방청장은 「소방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 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중 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법 제6조제1항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22